

「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」 의견제시의 건

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1.23)

1. 심사경과

가. 2004. 11. 8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11. 15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3호)

다. 2004. 11. 23 :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 (해양수산물과장 남위현)

가. 배 경

○ '02~'03.주문지구연안정비사업과 '97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용현면 신촌~남양동 미룡 간 4.54k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미룡 ~ 송천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안 관광도로의 기능 확충, 교통난 해소,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 미룡~송포 농공단지 간 해안 접근로 개설이 필요함.

○ 동 해안접근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용지의 목적으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매립위치와 매립용도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

나.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내용

구분	매립지구명	위 치	매 립면적 (m ²)	매 립 용 도	비고
당초	송 포	사천시 송포동	130,000	유통가공시설용지	
변경	송 포	사천시 송포동	130,000	유통가공시설 및 해안접근로 개설	해안접근로개설 24,000m ²
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연안정비계획구간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(별첨 도면 참조)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매립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(별첨 도면 참조)
- 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용도 변경
유통가공시설용지 → 유통가공시설용지 및 연안정비사업(해안접근로개설)

다. 근거법령

-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(지방의회 의견 첨부)

3. 집행부의 의견

- 송포지구 매립예정지는 1991년도 수산물유통가공용지의 목적으로 496,000m²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001. 7. 06.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시 주변에 유향 토지가 많이 있음을 이유로 매립면적 496,000m²를 130,000m²로 축소하는 조건(2001.3.24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시 원안가결)으로 조건부 반영되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·고시되었으며,
- 남양동 미룡~광포 간 연안정비사업(해안접근로개설)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 한바 기 고시된 매립기본계획 면적의 범위 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해안관광도로 기능확충, 교통난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와 매립용도를 변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변경)반영 위치도(붙임참조)

4. 검토 및 제시의견 요지 (전문위원 김영태)

- 송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
- 2002~2003년도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과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용현면 신촌~남양동 미룡 간 4.54k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미룡~송천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안관광도로의 기능 확충 및 교통난해소와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환경 및 지역여건 상 미룡~송포 농공단지 간 해안접근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
- 유통가공시설용지의 목적으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우리시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안접근로개설사업의 용도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,
- 송포지구 매립예정지는 1991년도 수산물유통가공용지의 목적으로 496,000㎡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001. 7. 6.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시 주변에 유희 토지가 많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면적 496,000㎡를 130,000㎡로 축소하는 조건(2001.3.24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시 원안가결)으로 반영되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·고시된 지역으로서,
- 남양동 미룡~광포 간 연안정비사업(해안접근로개설)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 한바 기 고시된 매립기본계획 면적의 범위 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해안관광도로의 기능 확충 및 교통난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송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중 매립면적 130,000㎡에 당초목적인 유통가공시설용지에서 유통가공시설용지 및 해안접근로 개설(24,000㎡)로 매립용도 등을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김기석 위 원	○ 이 사업의 주 목적이 공유수면매립인지, 도로 개설이 주 목적인지 불분 명함.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 안하면 공유수면매립인 경 우 매립과 동시 직선도로 개설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 견은?	해양수산과장 남 위 현	○ 매립목적이 우선입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공유수면을 매립 후 직선도로개설이 효과적이냐 시 재정형편과 여건상 장기간 소요되고 연접도로개설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선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 ○ 대한냉동까지는 연결되어 있으나 이구간은 매개설로 도로가 연결 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기 개설된 도 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구간으로 ○ 기 지정 고시된 130,000㎡ 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 여 해안 접근로(24,000㎡) 용 도를 추가하여 변경하고 이에 우선 매립한 후 도로를 개설 하고자 하는 것임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(의견) : 집행기관(사천시)의 제시의견대로 원안채택 가결(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: 없음